

더존비즈온 D-Cloud센터 IDC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
- ②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신청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 ③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 ④ 고객장비 : 고객의 통신 장비 및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 ⑤ 요금납입책임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⑥ 기본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면 및 제반 시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서비스로서 제17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⑦ IDC :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전산설비,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입니다.
-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변경 사유를 공시하여 회사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에 공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시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시하면서 고객에게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전항과 관련하여 고객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변경 이전의 약관을 적용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고객과의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단, 이때 고객은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회사는 소정 양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인증절차(아이핀,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로써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신청서(소정양식)
 - 2. 이용신청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각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승낙의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그 유보결정을 이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 내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로부터 IDC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IDC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8.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 제 5호 및 제6호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이용신청승낙은 회사와 이용신청고객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③ 이용신청고객이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개통

- ①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 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 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개통 희망일에 서비스

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③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 출입

-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 IDC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시스템 담당자 등 수시로 출입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 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출입 권한을 받아 IDC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 ④ 제1 내지 3항의 경우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다른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고객(시스템담당자 등 직원이나 대리인, 하수급인 등 고객의 위임, 위탁, 지시나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은 IDC내에 설치된 서버실에서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및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대한 잘못된 접촉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 2. 서비스 내용(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 ② 회사는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 등이 발생하여 이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를 임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위약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해당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및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고객과 회사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이용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고객의 지위 승계

-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 및 기타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산하여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지위의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고객의 지위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 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2.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발행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4. 주요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서비스 신청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 3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및 법인의 명의 등 필수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하여 신청한 경우

5. 회사의 서비스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6.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고객의 서비스이용내용이 관계법령 및 약관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 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⑤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상면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⑥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단독으로 고객장비를 일정한 장소로 반출·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 등 기타 반출, 이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각 회사의 IP 사용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IP를 할당 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⑧ 해지 서버를 반출하는 경우 고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 고객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⑨ 고객에게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에 따라 그 제공이 즉시 중단됩니다.

제15조 의견 진술

- 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위약금

-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

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배상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시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금액 일체
2.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산정식
 - 2.1 기본 서비스: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이용료 * 잔여개월수 * 50/100)
 - 2.2 기본 서비스의 범위: 네트워크(회선), 상면
 - 2.3 장비임대서비스: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 (월이용료 * 잔여 개월수 * 50/100)
3. 월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종류

제17조 회사 제공 서비스

①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Rack 또는 Cage를 제공하는 상면이용료와 고객장비를 회사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토록 하는 네트워크회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반 시설 등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부가서비스

1. 부가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회사가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임대서비스

서버임대서비스는 주요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보안서비스

1. 보안서비스 정의

“보안서비스” 라 함은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발생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공격 행위를 탐지 또는 차단하여 고객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네트워크 보안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보안서비스의 종류

2.1 보안서비스 이용 시 기본 제공서비스

2.1.1 보안이벤트 관련 요청 시 보고서 제공

2.1.2 보안이벤트 관련 요청 시 보안장비 로그데이터 분석 및 정보 제공

2.1.3 전문 인력의 보안 기술 및 침해사고 지원

2.2 방화벽 서비스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하여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내부의 보안정책에 근거하여 설정된 접근 규칙에 따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보안서비스

2.2.1 외부로부터의 고객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2.2.2 비정상 접근 행위에 대한 차단

2.2.3 고객에 맞는 접근 허용/차단 정책 수립과 적용

2.3 침입탐지 서비스(IDS/IPS)

침입탐지장비가 제공하는 알려진 취약점공격 탐지 필터를 통해 서버의 OS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을 탐지 또는 차단하는 서비스

2.3.1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행위 차단

2.3.2 비정상 또는 공격성 네트워크 패킷의 고객 시스템 유입 차단

2.4 웹방화벽 서비스

OWASP TOP 10에 정의 된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근거로 비정상 접근 또는 해킹 시도를 탐지 또는 차단하는 서비스

2.4.1 웹서버를 대상으로 한 웹 취약점공격을 웹방화벽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알려진 공격 탐지 패턴을 통해 탐지 및 차단

제18조 추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9조 설치 서비스

-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회선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 ② 고객장비설치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초기장비 설치 시 1회만 부과됩니다.

- ③ 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 할 경우,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ISP사업자)의 광 장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때 내부구 내 회선공사 및 별도의 회선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0조 IP 주소

-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고객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 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IP 주소 사용에 있어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주소 서비스에 대한 현행 국내 원칙, 기준, 지침, 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IP 주소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정보 중 일부(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DNS

- ①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IP주소로 혹은 IP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 ① 회사가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의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경우, 회사는 그와 관련한 라이선스 등 적법한 저작권 또는 그 사용권한의 보유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 운영체제의 설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에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고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장비의 임대

-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월 장비 임차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기간을 정하여 장비를 임차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위약수수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1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연체된 임차료의 납부 또는 임대차장비의 반납을 통보하며,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장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고객은 장비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한 경우에 한하여 장비를 IDC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장비를 반납한 경우 위 보증금을 환불합니다.
-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반납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으로 장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하여야 하며, 반납이 종료되는 경우 장비는 임의로 초기화하여 환수되므로, 이와 관련한 데이터 망실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과 사이에 별도의 장비 관리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최초 1회 설치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 SW(OS, 응용프로그램 등)를 재설치 하거나 장애처리 및 데이터 유실에 대한 배상 및 복구를 하지 아니하며, 운영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임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유상으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장비의 생산판매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⑧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유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⑨ 제47조 제14항에 따라 고객은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자신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7, 8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장장치에 대한 교환 작업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물리적 장애로 인하여 망실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 및 데이터 망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이 직접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임대서버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체제의 재설치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24조 기본서비스 고객의 장비 설치

-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 ② 고객 소유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장비의 설치는 안정적 운용과 다른 이용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2.2kw(220watt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항온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총 용량의 3%를 초과하거나,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25조 기술 지원 절차

- ① 고객소유의 장비인 경우 고객은 회사와 별도로 장비 관리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직접 장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내부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데이터 망실에 대비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저장장치에 미리 백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기술지원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④ 회사의 기술지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객의 데이터망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상복구 또는 정상가동시켜야 한다. 단, 원상복구 또는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기술지원을 위해 지불한 금액의 3배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한다.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소유한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③ 사업자인 고객이 자신이 소유한 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장비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회사는 소정 양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인증절차(아이핀, 휴대폰 또는 공

인인증서 등)로써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제3항의 경우 고객 본인이 직접 해당 장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제출시 대리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성한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 ⑥ 위 제 2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28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전자적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1.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 : D-Cloud운영본부 / 정보보안Unit / Unit장 황재승
 - 2. 전자적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1670-1472 / 팩스 02-6233-0337
 전자우편 주소 dmaster@douzone.com

제30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전자적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보 또는 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침해행위를 목적으로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 고객은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요금

제31조 요금의 종류

- ① 회사제공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면이용료 :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의 IDC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 2. 네트워크회선 : 회사의 IDC에 설치된 이용고객 장비가 IDC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요금
 - 3. 설치비 : IDC내 고객장비 연동을 위한 설치 비용
- ② 부가 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등의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③ 계약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2조 요금계산방법

- ① 요금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입니다.
- ② 월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변경일은 변경 익일부터 이용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③ 서비스 개설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제33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 ①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 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34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책임자는 해당청구 월의 익월 말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요금의 납입 의무

-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납입 불이행

-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1.5%)이 부가되어 재청구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 일을 기준으로 납입일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납입일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8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바 대로 하며,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이의신청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 ④ 이의신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 요금의 반환

-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 액과 상계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서비스 유보

- ①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1년에 1회만 신청가능
- ②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 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회선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④ 서비스유보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4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고객요청으로 인한 작업 및 장애처리 지원, 제46조 4항의 운영점검으로 인한 작업은 서비스 중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1조 시스템 보안

- ①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전파를 위해 회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프로그램, 해킹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 ② 회사는 장애처리를 위해 해당 고객 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수사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이 사

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42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회사가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9조의 배상 범위 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제 43조의 이용의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대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규정된 목적 이외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44 조 제1항에 따라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14. 다른 고객 또는 제 3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회생 또는 이와 유사한 신청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19.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악성코드(바이러스, 랜섬웨어 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21.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4조 이용제한절차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에서 네트워크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45조 위법사항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9 장 의무와 책임

제46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명령이 발부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체 네

트위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및 고객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0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⑧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으므로 회사는 무료 부가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⑨ 회사는 경미한 시스템 장애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밀한 장애 분석 및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장애의 경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고객은 회사 연동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연동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⑦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 정보는 고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⑨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⑩ 고객은 개인 정보의 ID 및 Password 관리 의무가 있으며, 그 관리 의무를 경시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⑪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⑫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⑬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⑭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⑮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⑯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 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⑰ 고객은 자신이 운영중인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안티 랜섬웨어 등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서버를 보호해야 하며,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8조 양도금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장 손해배상

제49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고객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만 한정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단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50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②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회사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51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2조 면책

- ①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쟁, 폭동,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7. 전기,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DoS공격으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9. 고객이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고객의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10.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바이러스, 랜섬웨어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1. 이용계약 해지 후 자동으로 삭제된 자료 및 이용고객이 직접 자료를 삭제한 경우
 12. 고객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관리 범위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현재의 보안 기술 수준으로는 방어가 곤란한 네트워크 해킹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3. 고객의 이용이 회사의 서비스 계약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② 고객의 손해가 이 약관 제14조, 제25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2조, 제43조 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또는 이 약관 제5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4조 특이사항

-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약관 제정 및 개정 이력>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